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37

발의연월일 : 2020. 9. 16.

발 의 자:김원이ㆍ기동민ㆍ김상희

김회재 · 맹성규 · 서영석

송재호 · 양경숙 · 오영환

이성만・이수진(비)・이용빈

인재근 · 조승래 · 최종유

최혜영・한준호・허 영

허종식 · 홍성국 의위

(20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가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에 확대되었으며,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계속 증가하 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은 계좌 자동이 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.

특히, 신용카드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이 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한 바 있음.

이에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

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(안 제88조의2제 1항 및 제89조제4항). 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제1항 단서 중 "자동 계좌이체의"를 "자동이체의"로 한다.

제89조제4항 중 "자동 계좌이체의"를 "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88조의2(납입의 고지 등)	제88조의2(납입의 고지 등) ①
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	
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	
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	
연금보험료의 금액, 납부 기한,	
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	
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 다	
만,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	
험료를 <u>자동 계좌이체의</u> 방법	<u>자동이체의</u>
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	
생략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9조(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	제89조(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	4
를 <u>자동 계좌이체의</u> 방법으로	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
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	체의
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	
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	
제공할 수 있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